

#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05월 26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1년 06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1년 06월 10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교통과장)

#### 가. 제안이유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 제정안은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근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대상(안 제3조)
-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기준(안 제4조)
-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제외 대상(안 제5조)
- 화재 발생시의 신고 및 복구비 지급(안 제6조,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현진)

○ 본 조례안은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평창군민

안 제4조에서는 화재증명원 상 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100만원의 지원기준

안 제5조에서는 복구비 지원제외 대상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복구비 지급 절차를 각각 정하였습니다.

○ 담당부서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주택화제가 총73건,  
연 평균 24건의 주택화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피해 복구지원 시 일정한 기준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상

“주민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치 사무”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제66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으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지원 할 수 있는 경우” 중

제2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을 근거한 것으로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 안 제4조제1항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삭제

○ 안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변경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 1부.

##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자연재난 이외의 재난으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말한다.
3. “복구비”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복구비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결혼 이민자 및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으로 평창군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 평창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재로 거주하던 평창군 내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건물주

2. 화재로 거주하던 평창군 내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 세대주

**제4조(지원기준)** ① 복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소: 500만원(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때)
2. 반소: 300만원(소실이 30%이상 70%미만인 때)
3. 부분소: 100만원 이하(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때)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④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
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배분하여 지급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 화재 원인이 본인 및 타인의 고의적인 방화 등 부정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3.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 경우

**제6조(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 ① 복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물주 또는

세입자는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복구비 지급)**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화재피해 신고서가 제출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화재피해신고서

(앞쪽)

## 1. 피해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유선전화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2. 피해내역

※소방서 화재증명원 필수 첨부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시설 피해	시설명		
	피해(소실)면적		
	피해 금액		
	피해 구분		
	피해 원인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 제6조에 제1항에 따라 신고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복구비를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고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뒤쪽)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평창군수가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평창군수가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